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62

발의연월일: 2021. 4. 8.

발 의 자: 박형수·정동만·이종성

김희국 · 김영식 · 조수진

김형동 • 윤두현 • 윤주경

홍문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0%에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,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%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전히 심각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서는 현 제도의 연장 시행이 필요함.

이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9조).

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 월 31일"을 각각 "2022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9조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 제19조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 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) 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) 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성 과공유 중소기업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 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 자"라 한다)에게 2021년 12월 -----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1일-----경영성과급(이하 이 조에서 "경영성과급"이라 한다)을 지급 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 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 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 제하지 아니한다.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 (2) -----

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 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을 감면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
<u>2022년 12월</u>
31일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